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86
----------	------

2024년 5월 2일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4. 2. 황유정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4. 4. 8.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4년 5월 2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자: 황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소식지와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반면, 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임. 이에 타 위원회와 동일한 임기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4. 16.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 가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예산정책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동일한 임기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이하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2 홍보물 편집위원회 개요

-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9.26. 시행)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가 제작·배포하는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sup>1)</sup>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sup>2)</sup>.
  - 2024. 4. 현재 총 10명(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각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소개,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
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

2)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서울의회 발행 전 월 1회 편집회의(서면 또는 대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2022.1.부터 2024.4. 현재까지 총 37회(서면 26회, 대면(화상) 11회)의 회의를 개최함(붙임자료).

**3    위원 임기 변경 (안 제6조제1항)**

- 안 제6조제1항은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b>2년</b>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임기) ① ----- <b>1년</b>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동 조례는 홍보물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제정됐는데, 임기의 경우 기존 의회 예규(「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를 반영하여 2년으로 정하고 있음.
  -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등 조례에 근거한 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1년인 가운데, 개정안은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 또한 1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간 구성·운영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제12차 홍보물 편집위원회 회의(2023.10.16. 개최) 등에서 위원 임기의 변경(2년→1년)을 논의한 바 있음.



#### 4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동일한 임기로 운영하기 위해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위원회 간 구성·운영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입법 조치로 판단되고,
  - ▶ 홍보물 편집위원회 회의 등에서 임기 변경을 논의한 점, ▶ 의원과 전문가 등에게 위원 선임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일하기 위해 위원 연임 근거 마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개최 : 39회 [대면(화상) 13회, 서면 26회] ('22년.1월~'24.4월 기준)

연번	회의일정	안 건
1	서면회의 ('22. 1. 6.)	제224호('22.1.13字) 가제본 회의
2	서면회의 ('22. 1. 18.)	제225호('22.1.27字) 가제본 회의
3	화상회의('22. 1. 27.)	제225호('22.3.17字) 기획안 회의
4	서면회의 ('22. 2. 17.)	제226호('22.3.31字) 기획안 검토
5	서면회의 ('22. 3. 17.)	제226호('22.3.31字) 가제본 회의, 민간광고 심의
6	서면회의 ('22. 3. 31.)	제227호('22.4.14.字) 기획안 검토
7	서면회의 ('22. 4. 6.)	제228호('22.4.28.字) 가제본 회의
8	서면회의 ('22. 4. 20.)	제229호('22.5.12.字) 기획안 검토
9	서면회의 ('22. 4. 28.)	제229호('22.5.12.字) 가제본 회의
10	서면회의 ('22. 5. 4.)	제230호('22.5.26.字) 기획안 검토
11	서면회의 ('22. 5. 18.)	제230호('22.5.26.字) 가제본 회의, 제231호('22.6.10.字) 기획안 검토
12	서면회의 ('22. 6. 3.)	제231호('22.6.9.字) 가제본 회의, 제232호('22.6.30.字) 기획안 검토
13	서면회의 ('22. 6. 22.)	제232호('22.6.30.字) 가제본 회의, 제233호('22.7.14.字) 기획안 검토
14	서면회의 ('22. 7. 6.)	제233호('22.7.14.字) 가제본 회의, 제234호('22.7.28.字 ) 기획안 검토
15	서면회의 ('22. 7. 20.)	제234호('22.7.28.字) 가제본 회의, 제235호 ('22.8.11.字) 기획안 검토
16	서면회의 ('22. 8. 3.)	제 235호('22.8.11.字) 가제본 회의, 홍보영상물 심의
17	서면회의 ('22. 11. 18.)	제242호('22.11.24.字) 가제본 회의
18	대면회의 ('22. 12. 1.)	제243호('22.12.8.字) 가제본 회의
19	서면회의 ('22. 12. 15.)	제244호('22.12.22.字) 가제본 회의
20	대면회의 ('22. 12.21.)	'23년도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시의회 발행계획
21	서면회의 ('22. 12. 29.)	제245호('23.1.5.字) 가제본 회의
22	서면회의 ('23. 1. 11.)	제246호('23.1.19.字) 가제본 회의

23	대면회의('23.2.1.)	<서울의회> 제안요청서 검토
24	대면회의('23.3.15.)	제247호('23.3.25.字) 가제본 회의, 제248호('23.4.25.字) 기획안 검토
25	대면회의('23.4.13.)	제248호('23.4.25.字) 가제본 회의, 제249호('23.5.25.字) 기획안 검토 서울의회 창간 30주년 기념[의회 버스킹 및 이벤트]
26	대면회의('23.5.15.)	제249호('23.5.25.字) 가제본 심의, 제250호('23.6.25.字) 기획안 검토 제11대 서울시의회 1주년 TV 이미지 광고 제작 보고
27	서면회의('23.5.25.)	제11대 서울시의회 1주년 TV 이미지 광고 제작 보고
28	서면회의('23.6.15.)	제250호('23.6.25.字) 표지 및 가제본 심의, 제251호('23.7.25.字) 기획안 검토 제11대 의회 1주년 TV 이미지 광고 심의
29	대면회의('23.7.14.)	제251호('23.7.25.字) 가제본 심의, 제252호('23.8.25.字) 기획안 검토
30	대면회의('23.8.14.)	제252호('23.8.25.字) 가제본 심의, 제253호('23.9.25.字) 기획안 검토 서울시의회 하반기 TV 광고 제작 보고
31	서면회의('23.8.22.)	서울시의회 하반기 TV 광고 제작 보고
32	서면회의('23.9.15.)	제253호('23.9.25.字) 가제본 심의, 제254호('23.10.25.字) 기획안 검토 시의회 하반기 TV 광고 제작 보고
33	대면회의('23.10.16.)	제254호('23.10.25.字) 가제본 심의 제255호('23.11.25.字) 기획안 검토
34	서면회의('23.11.15.)	제255호('23.11.25.字) 가제본 심의 제256호('23.12.25.字) 기획안 검토
35	대면회의('23.12.15.)	제256호('23.12.25.字) 가제본 심의 제257호('24.1.25.字) 기획안 검토 시의회 소식지 배부처 정비 계획
36	서면회의('24.1.15.)	제257호('24.1.25.字) 가제본 심의 제258호('24.2.25.字) 기획안 검토



37	서면회의('24.2.15.)	제258호('24.2.25.字) 가제본 심의 제259호('24.3.25.字) 기획안 검토 2024 「서울의회」 표지 및 컨셉 심의·검토
38	대면회의('24.3.15.)	제259호('24.3.25.字 ) 가제본 심의 제260호('24.4.25.字 ) 기획안 검토 <서울의회> 웹진 디자인 및 기능 개편 심의 2024 <서울의회> 민간광고 심의 기관 배부처 정비결과 보고
39	대면회의('24.4.15.)	저출생 극복을 위한 「TV광고 구성안」 보고 제260호('24.4.25.字 ) 가제본 심의 제261호('24.5.25.字 ) 기획안 검토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현행 조례에 위원의 연임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바, 개정안에 연임 규정을 보완하여 임기 조정에 따른 원활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연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8. 심사결과 : 수정 기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찬성 11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86
----------	------------

제안년월일 : 2024년 5월 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에 위원의 연임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바, 개정안에 연임 규정을 보완하여 임기 조정에 따른 원활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1년으로 한다.” 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연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임기) ① -----            ---- <u>1년</u>으로 한다.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임기) ① -----            ---- 1년으로 <u>하되, 연</u>  <u>임할 수 있다.</u> -----            -----            -----            -----.</p> <p>②·③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2</u>년으로 <u>한다</u>.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1</u>년으로 <u>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